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9호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월 5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민간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, 기금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금융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)
- 나. 기금 지원대상(사용 용도)의 범위를 구체화 함(안 제4조)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)

라. 기금의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 가능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[참조: 도시재생과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(전화 : 2286-6606, FAX : 2286-6918, E-mail : eiber99@sd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